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4호)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2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41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39호)
- 김성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13호)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51호)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08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10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	10
2. 부칙	24
※ 참고자료	26
1.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현황	26
2. 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30
3.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검토의견	31
4.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중 이격거리 관련 사항	35

I . 제안경위

【의안번호 제2200724호】

2024년 6월 20일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1732호】

2024년 7월 15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3141호】

2024년 8월 23일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3339호】

2024년 8월 29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3713호】

2024년 9월 5일 김성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4451호】

2024년 9월 30일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의안번호 제2207208호】

2025년 1월 2일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번호 제2200724호】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3개국들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함.

이미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50%를 돌파한 반면, 우리나라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그로 인해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납품계약이 취소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 실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목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100~1,000m까지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태양광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

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번호 제2201732호】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축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번호 제2203141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축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 및 풍력)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불어,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원칙적으로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

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번호 제2203339호】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번호 제2203713호】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번호 제2204451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등과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계획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고,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 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면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우려하여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공간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나 건물에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 · 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함으 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의안번호 제2207208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 도시계획 조례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격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이격거리 설정

7건의 개정안은 현재 지자체별 조례로 시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개정안 비교표]

구분	이소영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임미애 의원안	김소희 의원안	김성한 의원안	송재봉 의원안	박지혜 의원안
적용 범위	신·재생에 너지 설비	태양광·풍력		신·재생에 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광	신·재생에 너지 설비
규제 방식	예외적 규제	원칙적 규제	예외적 규제	원칙적 규제	예외적 규제 (주거지역 100m 이내)	원칙적 규제, (단, 규제불가 한 경우 명시)	미설정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위임 형식	대통령령	대통령령	조례	부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
위임 내용	규제 사유 및 이격거리 기준 등	이격거리 기준 등	이격거리 기준 등	이격거리 기준 등	주거 지역의 범위	그 외 설비 입지에 관한 사항	-

이소영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박지원의원안은 태양광·풍력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때 지역갈등 최소화 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거리기준 등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임미애의원안은 태양광·풍력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김소희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의3 신설).

김성환의원안은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시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격거리 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 등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의3 신설).

송재봉의원안은 태양광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업체 등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민 참여 발전사업’(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수익을 공유받는 사업의 형태)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박지혜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의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이소영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는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	제27조의3(태양광 및 풍력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경우, 지역갈등 최소화 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 범위와 이격거리 등의 구체적인	제27조의3(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등을 위하여 관

이소영의원안	박지원의원안	임미애의원안
격거리 및 그 설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설비[단, 지붕형 태양광(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를 말한다) 설비는 제외한다]: 주거지로부터 최대 10m 이내 2. 풍력 설비: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격거리의 예외를 두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이소영의원안	박지원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를」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설치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 그 밖에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소희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제27조의3(이격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발전 설비(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を生産하기 위	제27조의3(태양광 설비의 입지)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시설로부터 이	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김소희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 다.	한 설비를 말 한다)의 개발 행위허가에서 이격거리 입 지 제한은 주 거지역으로부 터 100m 이 내의 거리에 서만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 역의 구체적 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이격거리는 설치하려는 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	격거리를 설 정할 수 있 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격거리를 설 정할 수 없 다. 1. 제12조제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자 는 자의 부 지 및 건물 에 태양광 설비를 설 치하는 경 우 2. 제27조의2 에 따른 신 · 재생에너 지 발전사 업 중 태양 광 발전사 업에 참여 하여 관할	의 허가 기준 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 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 여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 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김소희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박지혜의원안
	2에 따른 주 민 참 여 형 발전사 업	지역 주민 과 이익을 공 유 하 는 경우	
	2. 지붕형 태 양 광 (건 축 물 이 나 구 조 물 의 지붕에 설 치하는 태 양광 설비 를 말한다)	② 그 밖에 태 양광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가소비 용 태양광		

세계 주요국들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음.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3년 1월)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현재 28,150MW(태양광), 2,293MW(풍력)인 발전설비 용량을 2038년까지 77,203MW(태양광), 40,671MW(풍력)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¹⁾.

1) < 203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

(단위: MW, 정격용량 기준)

이와 같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²⁾하고 있어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³⁾임.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지자체의 94%⁵⁾가 규제를 시행⁶⁾하고 있는 상황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현황]

(2024년 11월 기준, 단위: 개 지자체)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규제중 (전체 지자체 수)	17 (18)	11 (31)	15 (18)	20 (22)	0 (5)	2 (9)	0 (5)	0 (16)	0 (25)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0 (1)	0 (5)	1 (10)	22 (22)	14 (14)	1 (1)	15 (15)	11 (11)	129 (228)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매립가스	연료전지	IGCC	소계
'24년	28,150	2,293	1,909	256	1,852	1,148	346	35,952
'32년	61,739	24,868	1,909	256	1,852	2,821	346	93,790
'38년	77,203	40,671	1,909	256	1,852	3,621	346	125,857

자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5.2.)

2) 전국의 228개(세종 및 제주 포함) 기초지자체 중 129개(57%)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고,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은 129개, 풍력은 56개 지자체가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음.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현황은 [참고 1] 참조

3) 세계일보, “이격거리 규제 지자체 129곳... 갈 곳 잃은 태양광 시설[통계로 보는 행정]”, 2024.11.16.

4)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 ('17.12.) 87 → ('19.9.) 118 → ('23.5.) 130 → ('24.11.) 129

5)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및 충북의 123개 지자체 중 115개(94%)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위임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지자체들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 대상을 지역 실정에 따라 도로 및 주거지역 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격거리를 설정(태양광의 경우 최소 15미터에서 최대 1,000미터까지, 풍력의 경우 최소 100미터에서 최대 2,000미터까지)하고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설정 기준도 각기 다른 것으로 파악됨.⁷⁾

[지자체별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수준]

(단위: 개 지자체)

구 분		태양광	
		도로	주거
이격거리 범위	100m 이내	22	11
	100m~300m	58	57
	300m~500m	42	59
	500m~1,000m	5	1
	1,000m~2,000m	0	0
	기타	2	1
	합 계	129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는 설치공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위축과 재생에너지 보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들 이격거리도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7)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설정의 기준이 되는 주거지역 및 도로의 기준이 다르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도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음.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⁸⁾이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226개 카운티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격거리 중위값은 15m 수준으로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시행 중⁹⁾이고,

일본은 우리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별도의 이격거리 규제 없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소음민원에 대한 규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¹⁰⁾.

7개의 개정안들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이소영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박지원의원안은 지역갈등 최소화 등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에 그 범

8) 그린포스트, “태양광 발목 잡는 황당한 이격거리 규제.. ”가짜뉴스 기반 규제 철폐해야“, 2025.11.3.

9) 미국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도입 현황

규제유형	카운티 숫자(개)	이격거리 백분위 분포(m)			
		25%	50%	75%	90%
도로, 송전선, 철도	140	18	30	46	76
대지경계선	226	12	15	30	46
구조물	135	46	61	122	152
수역	11	23	30	38	76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10)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 2024.12.9.

위와 이격거리 등의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임미애의원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입지에 관하여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등을 목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김소희의원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김성환의원안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그 수혜가 직·간접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주민참여형 사업, 지붕형 태양광(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설비,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의 경우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의원안은 특정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익 공유형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박지혜의원안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이격거리 설정 대상 및 기준]

구 분	설정 대상	이격거리 설정 기준
이소영 의원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 원칙: 이격거리 설정 금지 • 예외: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박지원 의원안	태양광 및 풍력 설비	• 원칙: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이격거리 설정 가능
임미애 의원안	태양광 및 풍력 설비	• 원칙: 이격거리 설정 금지 • 예외: 주거환경 및 재산권 보호, 재해 안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 이격거리 설정 제한 - (태양광 설비*) 주거지로부터 최대 10m 이내 * 지붕형 태양광 설비 제외 - (풍력)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 이내
김소희 의원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 원칙: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 설정 가능
김성환 의원안	태양광 설비	• 원칙: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설정 가능 • 예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의 경우 이격거리 설정 금지
송재봉 의원안	태양광 설비	• 원칙: 이격거리 설정 가능 • 예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부지 및 건물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주민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설정 불가
박지혜 의원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 원칙: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에 대한 보급사업 및 금융지원 등 정부지원 사업 우선 지원 근거 신설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태양광에너지 및 풍력에너지 입지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는 현재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법률로 이격거리 규제를 규율하는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 개선 노력으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참고자료2)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 완화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¹¹⁾,

일부 지자체에서 개정안에 따른 이격거리 설정 제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참고자료3)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 태양광: 주거지역 100m 이내 설정 가능, 도로 이격거리 규제 불가 * (주거지역) 주민등록 완료된 「주택법」상 주택 5호 이상 밀집지역 (도로) 「도로법」상 도로
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 가이드라인 준수 기초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REC 가중치) 주민참여사업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 추가 부여 - (사업지원) 신재생보급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23.2.) 정리·재구성

11) 2024년 7월 기준 13개 기초지자체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참여형 발전설비(태양광 및 풍력),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부칙

7개의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후 6개월 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 거리와 관련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대비표]

이소영의원안	박지원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태양광 및 풍력 설비 입지의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김소희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 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김소희의원안	김성환의원안	송재봉의원안	박지혜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법률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적용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적용되므로,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시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33

참고 1

지자체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현황

① 규제 주체

-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이격거리 시행중

* 기초지자체 226개 + 세종, 제주 특별자치단체 포함

- 수도권·광역시 제외시 **95%**가 시행중, 매년 증가 추세

*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 : ('17.12) 87 → ('19.9) 118 → ('23.5) 130 → ('23.7) 12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제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대전	울산	전체
지자체수 (광역시·광역시 기초)	11 (31)	17 (18)	11 (11)	15 (15)	14 (14)	22 (22)	20 (22)	15 (18)	2 (9)	1 (1)	1 (10)	0 (25)	0 (16)	0 (5)	0 (1)	0 (5)	0 (5)	129 (228)

② 규제 수준

- (태양광) **15m이내~1,000m**로 다양 * 평균 주거기준 360m, 도로기준 320m

구 분		태양광	
		도로	주거
이격 거리 범위	100m 이내	22개소	11개소
	100m ~ 300m	58개소	57개소
	300m ~ 500m	42개소	59개소
	500m ~ 1,000m	5개소	1개소
	1,000m ~ 2,000m	0개소	0개소
기타		2개소	1개소
합 계		129개소	

③ 규제 대상

- 주거지역, 도로가 주요 이격대상이나, 주거지역·도로 정의도 지자체 조례마다 상이

* 주거지역(지자체별로 1호~10호 이상),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사군도, 농어촌도로)

- 일부 지자체는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 대해 이격거리 적용

번호	광역시	기초	태양광		풍력	
			도로(m)	주거(m)	도로(m)	주거(m)
1	강원	강릉시	200	200		
2	강원	고성군	500	500		
3	강원	동해시	200	500	200	500
4	강원	삼척시	500	500		
5	강원	양구군	200	300		
6	강원	양양군	300	400	800	2000
7	강원	영월군	500	500		
8	강원	원주시	200	200		
9	강원	인제군	100	300		
10	강원	정선군	500	500	500	500
11	강원	철원군	500	500		
12	강원	춘천시	100	100		
13	강원	태백시	300	250		
14	강원	평창군	300	200		
15	강원	홍천군	200	200		
16	강원	화천군	500	500		
17	강원	횡성군	500	500		
18	경기	가평군	300	500		
19	경기	과천시	0	100		
20	경기	수원시	0	0		
21	경기	안성시	200	500		
22	경기	양주시	0	100		
23	경기	양평군	200	300		
24	경기	여주시	200	500		
25	경기	연천군	200	300		
26	경기	이천시	300	300		
27	경기	파주시	100	100		
28	경기	포천시	200	300		
29	경남	거제시	300	300		
30	경남	거창군	200	600		2000
31	경남	고성군	500	500		
32	경남	남해군	200	200		
33	경남	밀양시	300	300		
34	경남	사천시	500	500		
35	경남	산청군	500	500		
36	경남	의령군	500	500		
37	경남	진주시	500	500		
38	경남	창녕군	250	250		
39	경남	통영시	200	200		
40	경남	하동군	300	500		
41	경남	함안군	400	500		
42	경남	함양군	300	400		
43	경남	합천군	300	500		
44	경북	경산시	300	300		
45	경북	경주시	300	200		
46	경북	고령군	500	300	500	300

번호	광역	기초	태양광		풍력	
			도로(m)	주거(m)	도로(m)	주거(m)
47	경북	구미시	500	500	1000	1000
48	경북	김천시	500	500		
49	경북	문경시	500	500		
50	경북	봉화군	500	300	2000	2000
51	경북	상주시	500	500	2000	2000
52	경북	성주군	500	500	1000	1000
53	경북	안동시	300	500		
54	경북	영덕군	200	200		
55	경북	영양군	500	200	1000	2000
56	경북	영주시	500	500	2000	2000
57	경북	영천시	300	300		1500
58	경북	예천군	500	500		1500
59	경북	울진군	1000	0		
60	경북	의성군	500	500		1000
61	경북	청도군	300	300	1000	500
62	경북	청송군	1000	500	2000	2000
63	경북	칠곡군	500	300	1000	1000
64	대구	군위군	500	200		1000
65	대구	달성군	500	500		
66	인천	강화군	100	300		
67	전남	강진군	500	500		2000
68	전남	고흥군	500	500		1000
69	전남	곡성군	500	500	500	500
70	전남	광양시	100	200	2000	2000
71	전남	구례군	1000	500		2000
72	전남	나주시	100	200	100	2000
73	전남	담양군	500	500		
74	전남	목포시	100	100		
75	전남	무안군	300	500		1000
76	전남	보성군	500	500		800
77	전남	순천시	200	500	2000	2000
78	전남	신안군	0	100		1500
79	전남	여수시	100	300	300	1500
80	전남	영광군	100	500	100	1000
81	전남	영암군	500	500	2000	2000
82	전남	완도군	1000	500	1000	1000
83	전남	장성군	500	500	500	2000
84	전남	장흥군	1000	500		2000
85	전남	진도군	500	300	1000	700
86	전남	함평군	500	300	2000	2000
87	전남	해남군	500	500		1000
88	전남	화순군	500	500		2000
89	전북	고창군	300	300	300	300
90	전북	군산시	150	150		
91	전북	김제시	100	200		
92	전북	남원시	300	500		
93	전북	무주군	250	250		1000
94	전북	부안군	150	300	150	300

번호	광역	기초	태양광		풍력	
			도로(m)	주거(m)	도로(m)	주거(m)
95	전북	순창군	200	500		
96	전북	완주군	200	200	200	200
97	전북	익산시	200	200		
98	전북	임실군	150	300	150	300
99	전북	장수군	100	150	2000	2000
100	전북	전주시	0	100		
101	전북	정읍시	100	100		
102	전북	진안군	500	500	2000	2000
10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0	200		
104	충남	계룡시	200	200	200	200
105	충남	공주시	200	300		
106	충남	금산군	200	300		
107	충남	논산시	200	500	200	500
108	충남	당진시	200	500		
109	충남	보령시	200	500	200	500
110	충남	부여군	300	1000	300	1000
111	충남	서산시	200	300	200	300
112	충남	서천군	300	500		1500
113	충남	아산시	200	500		
114	충남	예산군	200	500		
115	충남	천안시	200	300		
116	충남	청양군	200	500	200	500
117	충남	태안군	200	400	200	400
118	충남	홍성군	200	500		
119	충북	괴산군	200	500		
120	충북	단양군	300	300	2000	2000
121	충북	보은군	100	500		
122	충북	영동군	200	500	1000	1000
123	충북	옥천군	200	300	1000	1000
124	충북	음성군	200	200		
125	충북	제천시	500	300		
126	충북	증평군	200	200		
127	충북	진천군	200	200		
128	충북	청주시	100	200		
129	충북	충주시	200	300		

* 조건에 따라 이격거리가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 최장거리 집계

(예시) 주거 10호미만 100m, 10호이상 200m로 이격거리를 설정한 경우 최장거리인 200m로 집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 2

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3.2.1. 지자체 배포)

①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

- 주거지역*로부터 최대 100미터, 도로 제한 불가

* (主) 주민등록 완료된 주택법상 주택 5호이상 밀집지역 / (路) 도로법상 도로

② 지자체 인센티브 방안

- 이격거리 규제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발표 후 규제 철폐·완화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방안 >

사업	내용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부여	이격거리 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REC 가중치 <u>0.1 ~ 0.2까지</u> 범위 부여 ※ 이격거리 미준수시 0.08~0.16 vs 준수시 0.1~0.2 (+0.02~0.04)
융복합 지원사업	평가시, <u>이격거리 규제(정량 평가, 0~3점) 가점 평가하여 최대 3점 부여</u>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중 ' <u>수용성 확보계획의 적정성</u> ' 평가(15점)에 반영

③ 유해성 FAQ

-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서 다수 제기된 태양광 시설 유해성 논란에 대한 의문점 해소 및 태양광 발전시설 안정성 홍보 내용 포함

< 태양광 유해성 FAQ 내용 >

논란	주요 답변
눈부심 유발	발전효율 위해 빛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제작되며, 반사방지 기술 적용
전자파 배출	모듈에서 직류전기가 흘러 전기구조상 전자파 배출 無
패널 중금속	중금속 용출 등 관련 분석 결과, 모든 시료 기준치 이하 검출
소음 발생	특성상 밤에는 소음발생이 없으며, 낮에도 냉장고 수준의 소음 발생

참고 3

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검토의견

※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0724호,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것임.

□ 관계부처 검토의견

기 관		주요 내용
1	농림축산식품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다툼 등 갈등 야기 우려가 큼 ○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난립으로 농촌경관 훼손,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농지잠식 등의 문제 발생 가능 ○ 따라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절한 이격거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에서 이격거리 법제화 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해소된 상황임.

□ 지자체 검토의견

기 관		주요 내용
1	경기도 (찬성)	○ 경기도에서는 현재 10개 시군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중 - 산업부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과도하게 이격거리 규제 중이며,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 -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다만, ‘공공복리의 유지’ 이유로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둘 경우, 공공복리의 개념이 모호하여 또다른 논쟁이 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제한 금지 사항을 법령에 명시할 것을 요청 ※ 경기도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설정 금지에 대해서만 찬성 입장
2	경기연천군 (반대)	○ 낮은 지가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중, 태양광 발전소로 인한 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 반대가 극심한 상황 ○ 현행 이격거리 폐지시, 농촌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력 다소비 지역의 건축물 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

3	충북 제천시 (반대)	○ 이격거리 기준은 환경 및 주변피해를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음 - 지자체별로 주변 경관과 환경, 지역주민 피해여부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인 법 적용은 어려울 것임 ○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위배됨 ○ 태양광 발전시설은 준 영구시설이며, 현재 허가에 대한 기준만을 개정(제정)하고 있으나, 철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추후 생산이 완료된 후 철거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므로 혐오시설로 존치될 가능성이 농후함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주변은 경관의 저하로 단독주택 등의 설치를 기피하게 되므로 인근 토지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부합되는지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
4	충북 충주시 (반대)	○ 도로 이격거리 기준 완화시, 빛반사에 따른 운전자 주행능력 감소 및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 증가 등 개정안을 충분한 검토할 필요 ○ 주택 이격거리 기준 완화시, 태양광 가시광선 반사, 조망권 침해, 마을 경관 훼손 등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1375호,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에 저촉되므로,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호수, 연못, 저수지 등의 이격거리 기준 완화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1375호)”에 따른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저촉되므로,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충남 천안시 (반대)	○ 상기 개정될 법률안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천안시 건축조례」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천안시 건축조례」 별표4에서 명시하는 공작물 축조신고 기준(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과 상충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건축법」 개정이 필요함
6	전남 무안군 (반대)	○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정주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로 주민 갈등 유발을 방지하며, 개발행위 허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부터 최소 이격거리 500m 적용함이 타당 ○ 또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다양하고 직접적인 요구조건 수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 필요 ○ 해당 신설안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의2, 제7조의3을 적용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 및 수용성 제고로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제7조의3(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절차,내용)

7	경남 고성군 (반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상이하게 규정중 ○ 고성군의 경우, 무분별한 산지 개발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및 주민반대 민원 발생에 따라 이격거리를 지정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부처와 달리 직접적으로 주민민원을 받고있는 지자체의 업무환경을 배제하고 법으로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할 경우, 지역주민의 집단민원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 ○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빛공해, 전자파 발생 등 주민의 우려가 큰 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여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바, 법률로써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설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람
8	경남 창녕군 (반대)	○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청 대상지가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편중되어 해당지역은 난개발로 정주여건을 훼손시키고, 산사태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격거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필요

□ 농민단체 검토의견

기 관		주요 내용
1	전국 농민회 총동맹 (장흥군 농민회)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이격거리를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고,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어촌 파괴를 조장하는 것 -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제도 취지 존재
2	전국 농민회 총동맹 (영암군 농민회)	○ 장흥군 농민회와 동일 의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참고 4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중 이격거리 관련 사항

< ②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 핵심규제 합리화 >

1.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 (현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의 경우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사용기간이 최대 8년에 불과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가 지자체별로 달라* 사용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 총 228개 광역(세종·제주)·기초 지자체 중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로 이격거리를 제한중(100m~1,000m)

【현장의 목소리】

- ☹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넓혀주세요!"
- ☹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이 지자체별로 너무 커 혼란스러워요!"

- (개선1)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시 발전사업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한다*. (~'26.上)

*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농지법 개정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 (개선2)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법제화한다.(연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